신용카드 기업회원 약관 개정(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6조 (카드의 발급 및 관라) ① ~ ⑤ (생 략) ⑥ 제 2항 내지 제5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되, 개인형 법인카드사용자가 제3항 내지 제5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과 해당 개인형 법인카드사용자가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제6조 (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 2항 내지 제5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되, 개인형 법인카드사용자가 제3항 내지 제5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과 해당 개인형 법인카드사용자가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회원(개인형 법인카드 사용자 포함)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공정위 변경 명령에 따른 개정(금융회사의 면책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조항)